

전시행사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엑스 일대 ‘전시행사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’ 을 발령하고, 강남구 공고 제2020-1931호 ‘전시행사등 집합제한 행정명령’ 해제는 본 공고로 대체함

2020년 11월 13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처분개요

가. 근 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2호

나. 대 상 : (주)코엑스, (주)WTC서울, 행사를 하려는자, 행사를 참가하는자

다. 기 간 : 2020. 11. 13. (금) ~ 별도 해제시 까지

라. 내 용

1)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상시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내 행사의 자제 및 방역수칙(붙임) 준수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|---|
| 1단계 | ▶ 500명 이상 모임·행사 :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, 자체방역계획 수립 및 신고 |
| 1.5단계 | ▶ 500명 이상 모임·행사 :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, 자체방역계획 수립 및 신고 |
| | 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(대중음악), 학술행사, 축제 : 100인 미만 인원제한 ※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 :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|
| 2단계 | ▶ 100명이상 모임·행사 금지 |
| | ※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 :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|
| 2.5단계 | ▶ 50명이상 모임·행사 금지 |
| | ※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 :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 |
| 3단계 | ▶ 10명이상 모임·행사 금지 |

2) 「전시행사등 집합제한 행정명령」 (관광진흥과-17174, 2020.10.12.) 본 처분으로 대체

마. 처분사유 :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(20.11.7)을 반영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조치 시행

바. 위반시 행정조치

-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또는 집합금지 (감염병예방법 제49조)
- 집합제한·금지 등 위반시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(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)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5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6. 처분 담당자

| 이름 | 소속 | 직급 | 연락처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이준규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과 | 지방행정주사보 | 02-3423-5535 |

붙임 대규모 MICE행사 등 방역지침

대규모 MICE행사 등 방역지침

[기본사항]

- 거리두기(2m, 최소 1m이상), 방역물품 비치, 발열체크, 마스크 착용
-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와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가능하면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
 - 현장 전시회를 개최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여 추진하기
-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집합·모임·행사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준수

[사전 등록 및 입·퇴장]

- 행사장 입장 시 현장 등록보다 **사전 온라인 등록**하기
 - 불가피하게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(신원확인) 작성하기
- 입장대기 인원 **거리두기 유지**하기
 - 2M 간격 유지를 위해 바닥에 스티커 부착 및 차단벨트로 통제
 - 방역 요원들이 간격 유지선 준수 여부 확인 및 안내
- **입·퇴장 프로세스 준수**하기 (관람객/종사자)

[예시] ①출입명부작성(온/오프) → ②발열체크(비접촉자동체온측정계) → ③손소독
→ ④마스크 착용확인 → ⑤입장

- 행사장 **입구와 출구를 구분**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
-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(최소1m)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**입장 정원 제한**하기 (관람객, 참가사등 포함)
 - 온·오프라인 병행, 사전 예약제,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참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
 - 행사장 바닥 면적 $4m^2(16m^2)$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, 행사장 수용 인원의 50%이하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

[전시회 및 상담회 운영]

- 전시시설, 전시회 주최기관, 참가업체 직원 대상 체온 등 증상 여부 일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하기
- 방역수칙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·안내하기
- 한 개의 전시 부스 내에 참관객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
- 이동 시 참관객 및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기
- 상담회장, 회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 - 상담장 및 전시부스내 비말 차단막 설치
- 전시회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전자 결제방식 사용하기 (모바일페이, QR코드, NFC카드, 신용카드 등)
- 전시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는 상담 시 악수 등 가급적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 착용 후 상담진행 하도록 유도 및 수시 안내하기
- 경품이벤트 등 협소한 공간에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 운영은 자제하기
- 전시장 내 취식 보행 금지 (마스크 상시 착용)
 - 행사시설 내 휴게음식점등 운영시 해당 공간에서만 취식, 비말차단막 설치 등
- 전시장 내·외부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방역점검반 운영
 -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미준수 퇴장조치 시행
 - 방역수칙 준수 현장 홍보 등

○ 행사 전·중·후 행사장 **살균소독 및 환기**

- 소독 및 환기 대장 작성하기(일시, 관리자 확인 포함)
- 자연 환기(전시장 문 및 창문을 상시 개방) 및 공조시설을 시간당 가동해 환기(2시간 간격 공기질 측정, 15분 간격 전외기 공조)
- 행사 전일 야간 1회 특별소독 및 매일 2회 일반소독 진행
- 전시장 내부의 바닥, 대기실에 매일 1회 소독용액을 살포
- 화장실, 에스컬레이터, 의자등은 매일 2회 소독

○ 의심환자 발생 대비, **격리실 설치**

※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「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(3판, '20.07.03)」 및 「서울 개최 MICE 행사 감염병 대응 운영안내서」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